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2004 ~7
----------	---------

제출일자	2004. 1.
제출자	거창군수

■ 제정이유

-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1회용품 사용 규제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 골자

-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마련 (안 제2조)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 “별표1”과 같음
-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안 제7조)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별표1”과 같음
- 위반사항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함(안 제10조)
-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규정(안 제11조)
 - 피신고 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 기타 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정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
- 환경오염등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지침(환경부 67421 - 12호)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2003. 10)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군수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납부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이의제기) ① 제4조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1인당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② 위반행위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5조를 준용 한다.

제8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9조(신고방법 등)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 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 할 수 있다.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 시기 등) 신고포상금은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 지급 한다.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신고 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3. 기타 포상금 지급이 불가함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조례 제2조, 제6조 관련)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 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 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 단급식소	50	100	200	1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 품접 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 급식소	30	50	100	7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 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 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 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 (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 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별지 제1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락처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200 년 월

일

신고자 : 인

거 창 군 수 귀하

절 취 선

신고 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귀하